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과 언론인에 대한 감청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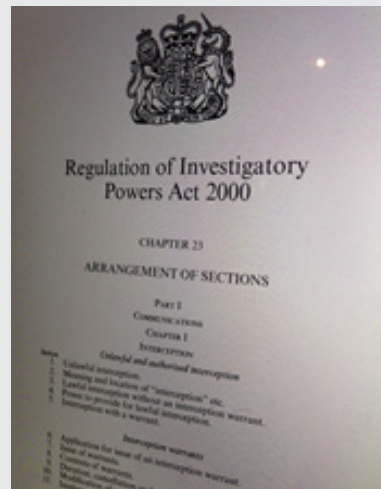
김지현
영국 골드스미스 런던대 문화연구 박사과정

영국 정부는 지난 2000년 테러 및 범죄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인터넷, 이메일, 통화기록 등을 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사권한규제법’(RIPA)을 입법했다.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감청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영국 경찰이 수사권한규제법에 따라 언론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청을 해온 사실이 폭로되면서, 이 법의 사용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수사권한규제법에 대한 여론 동향과 함께 영국 정부의 최근 대응을 소개한다.

수사권한규제법과 사회적 쟁점

영국에서 흔히 ‘RIPA’라고 줄여 부르는 수사권한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은 통신 감청을 포함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감시 활동에 있어 공공기관의 권한을 규율하는 법안이다. 표면상으로는 강력한 암호화나 인터넷

의 발달과 같은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0년 2월 9일 최초로 수사권한규제법안(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Bill)이 하원에 상정된 후 같은 해 7월 26일 국회 승인을 거쳐 입법이 이뤄졌다. 이후 공공 협의와 의회 토론 과정을 거친 후 의회에서 2003년 11월, 2005년 4월, 2006년 7월, 2010년 2월, 총 네 차례 개정·보완돼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됐다.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이 소개된 공식 문건
(출처 : www.legislation.gov.uk)

수사권한규제법은 특정 공공기관이 개인의 전자 커뮤니케이션에 접속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때 그 권한을 부여한다.¹⁾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에 근거하면, 특정 공공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해당 서비스 가입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정보에 몰래 접근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로, 이 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특정 인물들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대규모 감시를 할 수 있다. 셋째, 이 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감시를 용이하게 하는 맞춤형 장비를 요구할 수 있다. 넷째, 이 법에 근거해 특정 공공기관은 보호돼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암호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섯번째, 공공기관은 이 법을 이용해 사람들의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특정 공공기관의 이러한 감청 활동에 관련된 영장이나 그러한 감청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법원에서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한다. 요약하자면, 수사권한규제법은 국민 본인 동의

나 영장 없이도 국가가 인터넷, 이메일, 통화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비상한 권한을 부여한다.

일각에서는 테러리즘과 인터넷 범죄, 소아성애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사권한규제법 도입의 주요한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막상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 법이 공공기관에 의해 부적절하게 이용될 경우, 영국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감시 권력’으로 악용될 위험성도 일찍부터 지적되었다.

수사권한규제법은 입법 초기에는 경찰과 정보기관 등 소수의 권력기관에만 그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이후 다른 공공기관까지 그 적용 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영국 내 지방정부와 지역 기관까지도 수사권한규제법을 이용해 쓰레기 불법 투기와 애완동물 배설물 무단 투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23/contents>(검색일: 2015. 5. 11.)

이처럼 영국 사회 전역으로 수사권한규제법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가운데, 2008년을 기점으로 BBC를 비롯한 영국 내 주요 언론 매체들이 지방정부의 수사권한규제법 남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다. 풀(Poole) 지역의 의회가 어느 한 가정이 자녀를 이웃동네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를 위조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3주 동안이나 해당 가정의 통화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것이 비판 보도의 발단이 됐다.²⁾ 이 사건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영국 전국의 지역 의회들이 수사권한규제법에 따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샘프턴 남부(Northampton South)의 브라이언 빙리(Brian Binley) 하원의원은 지방정부가 “만화 속 탐정 캐릭터처럼 행동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수사권한규제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³⁾ 거래표준기관(Trading Standards Institute) 역시 비판적 여론에 합류, 수사권한규제법을 이용한 ‘감시’가 특정집단들의 성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러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008년 6월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의 사

이먼 밀턴(Simon Milton)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영국의 모든 지역 의회 지도자들에게 “지방정부가 수사권한규제법을 이용해 하찮은 문제까지 권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식문건을 전달하기에 이른다. 사이먼 밀턴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지역 의회가 수사권한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적절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 과정을 리뷰(Review)해야 한다고 새로운 행정 절차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지방정부가 수사권한규제법을 동원하는 횟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감시를 위해 수사권한을 청구한 횟수는 8천 477건으로 전년 대비 1천 4백건이나 줄었다.⁴⁾

‘스노든 폭로’와 언론인 감청 논란

한동안 잠잠해졌던 수사권한규제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지난해 1월 ‘가디언’(The Guardian)이 ‘스노든 폭로’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부터다. ‘가디언’은 “2013년 미국 NSA(국가안보국)의 전 세계적인 감청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에 따르면, 영국의 정보통신본부 GCHQ(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⁵⁾의 대규모 감

2) BBC, 2008. 4. 10. "Council admits spying on family," <http://news.bbc.co.uk/1/hi/england/dorset/7341179.stm>(검색일: 2015. 5. 12.)

3) BBC, 2008. 5. 22. "Council 'acted like Dick Tracy'," <http://news.bbc.co.uk/1/hi/england/northamptonshire/7414382.stm>(검색일: 2015. 5. 12.)

4) Telecomstech, 2014. 12. 8. Daws, R., "Surveillance is not a human rights violation, UK tribunal rules," <http://www.telecomstechnews.com/news/2014/dec/08/mass-surveillance-not-human-rights-violation-uk-tribunal-rules/>(검색일: 2015. 5. 11.)

5) 영국 외무부에 소속된 GCHQ는 영국 내부부의 MI5, 영국 외무부의 MI6와 함께 영국의 대표적인 3대 정보기관으로 불린다. 2013년 10월 전직 CIA, NS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영국 GCHQ가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35개국 정상들의 아이폰을 도청했다고 폭로해 GCHQ는 국제적으로 비난받았다. 올해 2월에도 에드워드 스노든은 NSA와 GCHQ가 심(SIM)카드 내에 저장된 암호화키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스마트폰의 도청 및 감청을 수행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폭로했다["ZDNet Korea", 2015. 2. 23. 손경호, "美·英 정보기관, 폰 심카드 해킹해왔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223111532 (검색일: 2015. 5. 12.)].

청활동이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사에 대해서도 이뤄졌다.”고 보도했다.⁶⁾



미국 NSA와 영국 GCHQ의 감청 활동을 폭로한
2013년 '가디언'의 홈페이지 캡처
(출처: 가디언 홈페이지)



영국 GCHQ 전경
(출처: '가디언', "GCHQ captured emails of journalists from top international media", 2015년 1월 19일자)

영국의 3대 정보기관 중 하나인 GCHQ는 감청을 전문으로 한다.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GCHQ는 수사권한규제법을 이용해 영국과 미국에서 BBC와 로이터(Reuters), 가디언(The Guardian),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르몽드(Le

Monde), 선(The Sun), NBC,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등의 유력 매체의 사내 이메일을 전방위적으로 수집, 정보 요원들의 내부 인터넷 망을 통해 공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가디언'은 스노든이 폭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난 2008년 GCHQ가 10분만의 수집활동만으로 7만여 개에 이르는 언론인들의 이메일을 수집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수집된 이메일에는 광고성 이메일도 포함돼 있었지만, 언론인들과 편집인들이 기사 내용을 논의하는 민감한 내용의 이메일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GCHQ는 감청 과정에서 관련성이 없는 데이터를 쉽게 걸러낼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는데, 이를 실험하고 그 결과물을 측정, 저장하기 위해 언론인들의 이메일을 대량으로 수집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데 막상 감청된 문건들은 기밀로 분류되기도 않은 채 대부분 무성의하게 보관됐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GCHQ가 최소한 해당 문서들을 비밀리에 보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청이 폭로되는 과정에서 세상을 더 놀라게 한 것은, GCHQ가 언론인을 테러리스트나 해커와 같은 위협적인 범주로 분류해왔다는 사실이다. 폭로에서 공개된 GCHQ의 문건에 따르면, 모든 뉴스 매체의 언론인과 편집인이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위협 범주로 분류됐다. 흥미로운 점은 언론인 중에서도 탐사보도 언론인들이 특히 문

6) 'The Guardian', 2015. 1. 19. Ball, J., "GCHQ captured emails of journalists from top international media," <http://www.theguardian.com/uk-news/2015/jan/19/gchq-intercepted-emails-journalists-ny-times-bbc-guardian-le-monde-reuters-nbc-washington-post>(검색일: 2015. 5. 12.)

제라고 거론됐다는 사실인데, 이는 이들이 퇴직한 공직자와 비공식적인 접촉을 시도, 내부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체적으로 GCHQ는 언론인을 테러리스트나 해커와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규정하는 한편,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정보 보안 위협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을 5점 만점으로 계산할 때, 언론인에게는 ‘(위험) 가능성’(Capability) 항목에서 2점을, ‘우선성’(Priority) 항목에서 3점이나 주었다. 반면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중간’ 수준의 정보 보안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탐사보도 언론인보다는 위험성을 높게 보았다. 하지만 ‘우선성’ 항목에서는 2점을 주어 언론인보다 덜 위협적이라고 분류했다. ‘가능성’ 항목에서는 4점을 주어 언론인보다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가디언’의 보도에 대해 GCHQ의 대변인은 “정보 기관의 활동에 대해 발언하지 않는 것이 다년간의 정책이었다. 모든 GCHQ의 작업은 엄격한 법적·정책적 틀을 준수하여 그 활동의 필수성과 적합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정부기관의 철저한 관리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GCHQ의 모든 활동은 유럽인권보호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전국에서 언론계 반발

국가 정보기관이 언론인을 테러리스트나 해커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범주로 분류하고 대규모 감시 활동을 펼쳤다는 사실을 접한 언론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문제는 이러한 GCHQ의 감청이 수사권한 규제법에 의거했을 때에는 합법이라는 점이다. 현행 수사권한규제법에 의하면 경찰이나 방위 기관은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조직 내 관리자의 허락만 구하면 수사 대상의 전화 및 통신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이후로도 정보기관이 수사권한규제법을 이용하여 어떠한 법적 승인도 거치지 않은 채 언론인 대상 대규모 감청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인의 커뮤니케이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만드는 수사권한규제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영국 정부는 언론인의 기밀이 담긴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사회적 압력에 직면했다. 영국 내 언론인들과 법조인들은 수사권한 규제법과 연계된 경찰의 감시권력 오용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영국 총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표현의 자유 법’이 긴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언론인의 커뮤니케이션을 감청하는 것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에 영국 내 전국지 포함 100여 개 신문 편집인들의 서명을 담아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 측에 전달했다.⁷⁾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지는

7) "Financial Times", 2015. 1. 20. Mance, H., "UK editors seek reform of police access to journalists' records," <http://www.ft.com/cms/s/0/e6ead332-a001-11e4-aa89-00144feab7de.html>(검색일: 2015. 5. 12.)

“우리 언론인은 수사권한규제법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는 제목의 칼럼으로 수사권한규제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⁸⁾

스노든의 폭로 이전에도 수사권한규제법을 악용한 언론인 감청은 종종 언론계의 골칫거리였다. ‘가디언’은 1월 19일 기사에서 영국 경찰이 수사권한규제법을 이용해 ‘선(The Sun)지의 톰 뉴튼 던(Tom Newton Dunn) 정치부 편집인의 통화기록에 접근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언론인 무작위 감청은 수사권한규제법을 통한 감청 활동이 특정 사건이나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그것도 특수한 사회적 집단인 언론인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수사권한규제법이 언론의 공익성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영국 정부, 언론인 대상 감청 실태 조사

이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요청으로 영국 의회는 공공기관이 수사권한규제법을 동원해 언론인을 감청한 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통신감청위원회인 IOCCO(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Commissioner’s Office)가 2014년 10월부터 조사에 착수, 지난 2월에 그 결

과물을 총리실에 제출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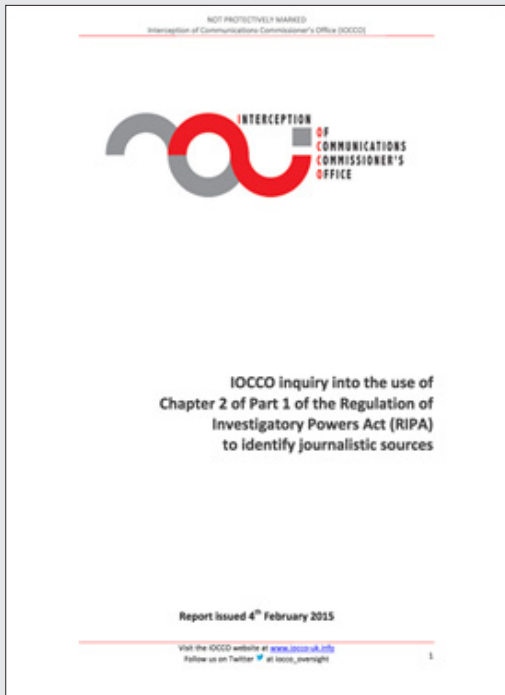
언론에 공개된 IOCCO 조사결과에 따르면, 언론인에 대한 경찰기관의 감청 활동은 수사권한규제법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IOCCO가 경찰의 감시 활동 현황을 수치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19개에 달하는 경찰기관들이 언론인의 기밀 정보 출처를 캐낸다는 명목하에 6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대규모 감시 활동을 펼쳐온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보고서에는 경찰이 34건의 수사를 위해 82명의 언론인과 242명의 정보원 사이에서 오고 간 통화나 이메일 기록에 대해 감청을 요구한 사실과 그 구체적인 사례가 공개됐다. 경찰은 수사권한규제법을 이용해 이러한 수사들에 있어 조직 내 관리자들에 의한 승인만으로도 언론인들에 대한 감청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승인 과정의 적절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언론을 통해 더 논란이 된 것은 실제 경찰이 두 달간의 감청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절반 가까이가 통화기록에서부터 교통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실제 수사와는 관계없는 개인 정보였다는 점이다. 언론인의 특성상 수집된 정보 중에는 수사와는 관련없는, 보도를 위한 기밀정보까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IOCCO는 지난 3년 동안 19개 경찰기관이 수

8) 『The Independent』, 2015. 1. 18. Gore, W., “We journalists have every reason to fear the Ripa,” <http://www.independent.co.uk/voices/comment/we-journalists-have-every-reason-to-fear-the-ripa-9986512.html>(검색일: 2015. 5. 13.)

9) 『The Guardian』, 2015. 2. 4. Rozenberg, J. and J. Halliday, “Police will need judge’s permission to access journalists’ phone and email records,”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feb/04/police-600-applications-trace-journalist-sources-snopping-watchdog>(검색일: 2015. 5. 13.)

사를 목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정보까지도 공권력을 이용해 제공받은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제도 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통신감청위원회인 IOCCO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 수사권한규제법에 근거하여 영국 경찰이 언론인 정보를 감청한 실태를 조사해 담았다.
(출처: IOCCO 홈페이지)

나아가 IOCCO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측에 “언론인의 정보원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내 자유로운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들어 현재의 수사권한규제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언론인에 대한 감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

져올 경우, 이는 인권 침해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러한 수사권한규제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해결할 방법은 있는 걸까? IOCCO의 보고서가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다. 먼저, IOCCO는 보고서에서 경찰이 수사권한규제법을 통해 감청 활동에 대한 요구를 할 때 “필수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을 유지할 경우, 경찰 고위직에게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언론인의 커뮤니케이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인물들이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그 예시로 감독관 등을 거론했다.

두 번째 제안은 수사권한규제법의 개정이라는 초강수이다. IOCCO는 표현의 자유와 수사권한규제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이 언론인의 비밀스런 정보원을 밝히려 할 때 “판사의 승인을 통해서만 수사권한규제법을 이용하도록 하는 강력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총리 측에 제안했다.

정부 대응과 제도적 변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IOCCO가 제출한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대변인은 총리가 판사의 승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수사권한규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

했다. 문화부 장관 출신인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 신임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총리실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지드 자비드 장관은 “저널리즘은 테러리즘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수사권한규제법이 반테러법의 차원에서 입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합법적인 보도를 위협하는 데 악용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경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¹⁰⁾ 영국 언론 역시 향후 수사권한규제법이 언론인에게 적용될 때, 그 적용 과정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총리실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¹¹⁾

실제로 총리실의 발표가 있는 뒤 2주 만에 BBC는 “IOCCO의 제안대로 향후 경찰이 수사권한규제법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임시수단을 영국 내무성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¹²⁾ 내무성은 다음 의회가 구성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이러한 변화를 공식적으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내무성의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당 당수이기도 한 닉 클레그(Nick Clegg) 부총리는 “아무 조치도 없는 것보다는 임시수단이 있는 게 낫다. 하지만 영구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가 현재

의 임시적 조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수사권한규제법에 대한 현실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맺으며

수사권한규제법이 도입되고 15년 만에 영국 정부는 언론과 국민의 표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해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방정부로부터 경찰에 이르는 공공기관이 조직 내부의 승인이 아닌 판사의 법적 허가를 통해서만 수사권한규제법을 행사할 수 있게끔 임시적 조치를 취한 것이 그 첫걸음이다. 영국 내각은 이에 멈추지 않고 향후 영국 의회에서의 실질적인 개정이 논의될 것이라고 그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물론 영국 사회가 수사권한규제법의 도입 이후 일련의 폭로 사건과 스캔들을 겪으면서 갖게 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 닉 클레그 부총리의 발언처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보다 현실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제도에 대한 개선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과연 수사권한규제법이 어디까지 변화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10) 『The Guardian』, 2015. 2. 5. Mason, R., “Culture secretary Sajid Javid: journalism is not terrorism,”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feb/05/culture-secretary-sajid-javid-journalism-not-terrorism>(검색일: 2015. 5. 13.)

11) 『The Guardian』, 2015. 2. 4. Rozenberg, J. and J. Halliday, “Police will need judge’s permission to access journalists’ phone and email records,”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feb/04/police-600-applications-trace-journalist-sources-snopping-watchdog>(검색일: 2015. 5. 13.)

12) 『BBC』, 2015. 2. 21. “Police requests for journalists’ information must go to judge,” <http://www.bbc.co.uk/news/uk-31564777>(검색일: 2015. 5. 13.)